

#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 보고

의안 번호	2020-제 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일자 : 2020. 2. .

제 출 자 : 사 천 시 장

## 1. 2020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 근거

- 사회복지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2항
  -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,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.
  -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·군·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.

## 2. 특징 및 방향

- 제4기(2019년-2022년)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유지
  - 세부 추진방안, 모니터링 등에 중점
- 지자체 자체사업 중심으로 구성(국·도비 보조사업 배제)
- 시민이 먼저라는 시정지표를 바탕으로 주민참여 중시

## 3. 추진경과

- 계획수립 T/F팀 구성 → 욕구 및 자원조사 → 시행계획(안) 수립  
→ 관련부서 의견수렴 → 심의·확정(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)

## 3.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

-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와 공공서비스 간 연계·협력 활성화  
: 권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,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등
-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 공무원 확충  
: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및 읍면동 ‘맞춤형 복지팀’ 기능 및 역할 강화
- 사회복지급여 제공 및 관리 개선  
: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관력 기회조사 실시,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리플릿 및 안내문 읍면동 배치
- 담당인력 교육훈련 강화로 전문성 제고

## 5. 향후 계획

- 시행계획 경상남도 제출: 2020. 2월
-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 평가 및 심의: 2020. 3월

붙임 제4기(2019-2020)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1부. 끝.